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기획재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도자료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보도일시  | 배포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포일시 | 2021. 1. 5.(화) 14:00   |  |
| 담당과장  | 세제실 조세정책과장<br>김영노 (044-215-4110) | 담당자  | 김만수 서기관 (044-215-4111) |  |

## 조세특례제한법,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

- 기획재정부는 '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'('20.11.19), '2021년 경제정책방향'('20.12.17), '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'('20.12.29) 및 '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'('20.12.23)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.
-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('21.1.7.~1.14.),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,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 개정안 주요내용

### < 조세특례제한법 >

- ① '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
(21년 경제정책방향)
  - '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하는 경우 5%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% 소득공제 적용(한도 100만원\*)

\* 현행 공제한도(급여수준별 200~300만원: '20년은 230~330만원)에 100만원 추가

### ②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
(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)

-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%에서 70%로 상향  
(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% 세액공제율 적용)

### ③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\* 한시 개편

(\*21년 경제정책방향)

\*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~1,200만원(대기업: 2년간, 중소·중견기업: 3년간) 소득세·법인세 세액공제

- '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'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

▶ (현행) '20년 고용 감소시 '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'20년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

▶ (개정) '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

### ④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

(서민·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)

-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'22.12.31.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% 감면

### <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(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) >

####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

#### ⑦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

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: 매 분기 → 매 월

-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: 매 반기 → 매 월

## ㉡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

### -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·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\*

\* 【미제출 가산세】 1% → 0.25%

【지연제출 가산세】 0.5% → 0.125% (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)

### - 소규모 사업자\*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혼행 제출 기한\*\*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(21.7월~'22.6월) 가산세 면제

\*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

\*\* 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분기별) :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

②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(반기별) :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

### -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\*이 일정 비율 이하(시행령에서 규정)인 경우 가산세 면제

\* 소득자의 인적사항,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## ㉢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: 매년 → 매 분기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044-215-내선번호)

### ■ [조세특례제한법]

① 소득세제과 4211      ② 소득세제과 4212

③ 조세특례제도과 4131      ④ 재산세제과 4314

### ■ [소득세법, 법인세법]

①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4371

## 참고 1

##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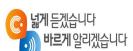
### [3]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(§ 29의7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| <input type="checkbox"/> '20년 고용감소의 경우<br>사후관리 예외를 인정하여<br>지속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radio"/> (공제금액) 전년대비 상시<br>근로자 수 증가시 1인당<br>연간 400~1,200만원 세액공제<br>(단위: 만 원)   |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중소기업<br/>수도권<br/>지방</th><th>중견<br/>기업</th><th>대기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청년 장애인 60세<br/>이상 국가유공자 등</td><td>1,100</td><td>1,200</td><td>800</td><td>400</td></tr> <tr> <td>기타 상시근로자</td><td>700</td><td>770</td><td>450</td><td>-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구 분   | 중소기업<br>수도권<br>지방 | 중견<br>기업 | 대기업 | 청년 장애인 60세<br>이상 국가유공자 등 | 1,100 | 1,200 | 800 | 400 | 기타 상시근로자 | 700 | 770 | 450 | - |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|
| 구 분   | 중소기업<br>수도권<br>지방   | 중견<br>기업          | 대기업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청년 장애인 60세<br>이상 국가유공자 등  | 1,100   | 1,200             | 800      | 400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상시근로자  | 700   | 770               | 450      | -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radio"/> (공제기간) 대기업 2년<br>중소·중견 3년   |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radio"/> (사후관리) 최초 공제받은<br>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<br>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,<br>- ①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<br>공제액 납부 + ②감소한<br>과세연도부터 공제 미적용<br><br>< 신 설 >  | <input type="radio"/> (좌 동)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<input type="radio"/> '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<br>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<br>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<br>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*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①감소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
의무 면제 + ②잔여기간 동안 세액  
공제 지속 적용

<개정이유>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efpr@korea.kr](mailto:moefpr@korea.kr)

